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

관한법률위반·횡령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12. 3. 2014고합271, 308(병합), 533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민구(기소), 이진용(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외 9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3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, 피고인 3(원심: 피고인 3)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4(원심: 피고인 4)를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5, 피고인 6(원심: 피고인 5)을 각 벌금 1,000만 원에, 피고인 7(원심: 피고인 6)을 징역 6월에, 피고인 8(원심: 피고인 7)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5,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년간,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년간, 피고인 8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△△ 인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, □□□ 투자 유치 관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, 공소외 11, 공소외 2에 대한 각 횡령의 점과,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△△ 인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, 피고인 9(원심: 피고인 8), 피고인 10(원심: 피고인 9)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